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0.11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table>
<tr><th>구 분</th><th>정정 전</th><th>정정 후</th></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td><td>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다.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70%이상</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d><td>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u>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다. 모자형 구조<table><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u>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u></td><td>70%이상</td></tr></table>[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td></tr>
</table>

<table>
<tr><td></td><td><신설></td><td><u>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u>
・주요투자대상 : <u>집합투자기구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u>
・투자목적 : <u>시장사이클에 따라 MSCI 유럽인덱스 대비 연 300 – 500 bps 초과 달성 추구</u>
・주요투전략
<u>-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에 투자</u>
<u>-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외 자산은 통화 관련 장내외파생상품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u></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u>및 유럽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td></tr>
</table></td><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table>
<tr><th>투자대상</th><th>투자비율</th><th>투자대상 내역</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u>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u></td><td>70% 이상</td><td>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u>및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유럽주식에 주</u></td></tr>
</table></td></tr>
</table>

		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집합투자기구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신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모집합투자기구** **<별첨1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변경 발효일 1개월 전까지 국내에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신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USD)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등록 후 공시(수시공시 등)될 예정입니다. **(2) 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별첨2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UBS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Equity Fund" (이하 "피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외국집합투자증권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집합투자기구인 "UBS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Equity Fund" 및 "UBS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quity Fund" (이하 "피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주식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투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4)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1.0% 수준입니다.(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실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금액에 따른 Share Class 와 Rebate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USD)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투자**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4)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USD) 및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삭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유럽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징구하는 보수는 연간 1.00% 수준입니다. 단,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수**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신설>** **(2) 투자대상**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신설> **(3) 비교지수(Benchmark)** : MSCI World index *95% + call 금리5% ※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글로벌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Global SICAV –Global Opportunity Unconstrained (USD)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World *95% + call 금리5%를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유럽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유럽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2) 투자대상**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비교지수(Benchmark)** : MSCI World index *95% + call 금리5%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World *95% + call 금리5%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table>
<tr><td></td><td>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td><td>공시될 것입니다.</td></tr>
<tr><td></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신설></td><td>[1] 투자전략
2. 투자전략<table><tr><th colspan="2">모투자신탁명</th><th>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th></tr><tr><td rowspan="2">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주요투자대상</td><td>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채권 등 40% 미만</td></tr><tr><td>주요 투자전략</td><td>-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유럽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이익을 추구합니다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합니다.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td></tr></table></td></tr>
<tr><td></td><td>[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td><td>[1] 투자전략
3.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td></tr>
</table>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모투자신탁및 유럽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8 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하나 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 별첨1

2. 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집합투자증권	**60% 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유럽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②채권	**40% 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하며,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화증권을 포함한다)
③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어음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⑤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⑨증권의 차입	집합투자증권,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자산총액의 20%이하	
⑩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다. 위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동일 법인 발행 주식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 증권투자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한도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 가목, 나목 및 마목,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적용특례	-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음 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1)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2)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기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영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위 나목을 제외한다)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 별첨 2

(2) 하나 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가. 투자전략

-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유럽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인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에 주로 투자하여 롱숏전략을 통해 벤치마크 대비 알파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운용역의 판단에 의해 주요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향후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집합투자업자	UBS Asset Management (UK) Ltd., London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설정일	2007년 5월 31일
주요투자대상	순자산의 최소한 60%를 유럽에 소재하거나 또는 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회사의 지분증권
주요투자전략	이 상품은 벤치마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액티브한 종목 선정을 통해 유럽 경제 전 싸이클에 걸쳐 투자기회를 포착합니다. 3~5년의 시장사이클에 따라 MSCI 유럽인덱스 대비 연 300 – 500 bps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이 상품은 롱/숏 전략을 통해 베타(Net Exposure)를 전체 순자산의 약 50% ~15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80~120%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롱 포지션은 최대 150%까지 제한되며, 숏은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이 상품은 롱/숏 익스포저를 얻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 순자산	약 5조 7,975억원(2016년 5월 31일 기준)
책임운용역	Maximilian Anderl (운용중인 타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14개, 약 30억 USD)
비교지수	MSCI Europe *100%
국내 등록일	2014년 2월 25일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펀드의 운용상 중요한 변화(외국위탁업자의 변경, 펀드 보수의 인상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이 되는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펀드는 스윙싱글프라이싱(Swing Single Pricing)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스윙싱글프라이싱(SSP) 제도란 해당 펀드에 추가 자금 유입과 자금의 유출이 있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해당 자금 유입 및 유출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가 산출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를 매입 또는 환매할 때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보수 및 비용 예시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때 부과되는 거래 비용은 해당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의 2%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 비교지수(Benchmark) : MSCI Europe *95% + call 5%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을 유럽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MSCI Europe *95% + call 5%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1)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 ■ 투자대상인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전략의 일관성,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 ■ 펀드매니저와의 면담 및 운용보고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한 운용현황 및 전망 파악

(2) 환헷지

- ■ 외화자산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통화선물 및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헷지
- ■ 단,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설정, 해지가 빈번하다는 제약조건하에 환헤지를 수행하므로 투자기간중 발생손익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전적으로 회피할 수는 없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만기와 통화선물 만기의 차이로 rollover 위험이 남게 됨

※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유럽 주식 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UBS (Lux) Equity SICAV - European Opportunity Unconstrained (EUR) 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투자신탁으로서,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추가
3. 변경효력발생일 : 2016.10.11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항 <신설>	제3항 4. 하나UBS 글로벌오퍼튜니티 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